

#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김은영 의원

발의일 : 2022. 2.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같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조제2항의 「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같음한다」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